

안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762
----------	-----

제출연월일 : 1999. 5 . .

제출자 : 안산시장

□ 폐지이유

-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국제화 인식이 제고되고, 자치단체의 국제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 우리시의 국제교류와 통상활동에 대한 협의·조정 기능을 담당해온 안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폐지하여, 자율적인 국제교류 통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골자

“동조례 폐지”

□ 폐지조례(안) : 별첨

□ 기타 참고사항

- 경기도세계화추진협의회폐지조례공포문
- 안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안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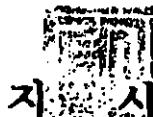
안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의회 제13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경기도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 기 도



의회
임시회

1999년 4월 22일

경기도조례 제 2901 호

경기도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

경기도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편 경제통상 제3장 통상협력 안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안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안산시조례 제542호)
1994. 5. 14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에 관한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 본청 실·국장과 그외 위원은 국제교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에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4조(회장 및 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②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제3편 경제통상 제3장 통상협력 안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제5조(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괄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사장은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제출등) ①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